

＜ 자동차보험 상품 요약서 ＞

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반드시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

가.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

☐ 자동차보험의 종류 및 가입대상

구 분		가입대상
개 인 용 群	KB개인용	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(법정승차정원 10인이하) 단,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대표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도로주행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차는 제외
	KB다이렉트개인용	
	KB다이렉트(인터넷)개인용	
	KB다이렉트(플랫폼)개인용	
업 무 용 群	KB업무용	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.
	KB다이렉트업무용	
	KB다이렉트(인터넷)업무용	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중 개인소유 자동차
	KB Ace업무용	
영 업 용 群	KB뉴비즈니스자동차보험	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중 법인소유 자동차
	KB영업용자동차보험	모든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
	KB다이렉트영업용자동차보험	
이 륜 차 群	KB다이렉트(인터넷)영업용자동차보험	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
	KB이륜자동차보험	
	KB다이렉트이륜자동차보험	
기타		KB운전자보험, KB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등

☐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

- ① 대상 :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또는 기존 가입기간 동안 사고를 여러 번 야기하여 보험 회사가 인수를 거절한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② 취지 : 인수거절된 가입자에게 종합보험 가입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무보험 자동차 양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및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.

나. 보험금 지급사유,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 사항

☐ 의무보험 관련사항

① 정의

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(이하 자배법)에 의거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을 의미합니다.

② 보상한도

구 분		2005.2.22.~2016.3.31 중의 사고	2016.4.1. 이후의 사고
대인 I	사망	최고 1억원	최고 1억 5,000만원
	부상	최고 2,000만원	최고 3,000만원
	후유장애	최고 1억원	최고 1억 5,000만원
대 물		1,000만원 이상	2,000만원 이상

③ 특 징

- 강제보험성 : 자배법에 근거한 강제보험,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반면 보험회사에게도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인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- 계약의 해지 제한(의무보험의 경우는 계약자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. 단,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는 해지가 가능합니다)
 - 자동차의 말소등록(이륜차는 사용폐지)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
 -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
 - 천재지변, 화재, 도난,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중복계약의 경우 등
- 유한보상제
 - 대인배상 : 보험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액이며, 1사고당 한도는 없습니다.
 - 대물배상 : 보험가입금액은 1사고당 한도입니다.
-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인정
피보험자에게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○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

자배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보유불명사고,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시 대인배상 I 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음주운전, 무면허운전, 마약·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, 다음의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
- 대인배상 I : 한도 내 지급보험금

- 대인배상 II : 1사고당 1억원

- 대물배상 :

○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: 한도 내 지급보험금

○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: 1사고당 5,000만원

④ 의무보험 가입대상 자동차

○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

○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자배법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*

* 덤프트럭,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, 타이어식 기중기,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, 콘크리트 믹서트럭, 타이어식 굴삭기,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, 도로보수트럭, 노면측정장비(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)

⑤ 의무보험 미가입시 제재

○ 미가입시 과태료

의무보험 미가입기간	자가용자동차		사업용자동차		이륜자동차	
	대인 I	대물	대인 I	대물	대인 I	대물
10일 이내	10,000원	5,000원	30,000원	5,000원	6,000원	3,000원
매1일 초과	4,000원	2,000원	8,000원	2,000원	1,200원	600원
최고한도	60만원	30만원	100만원	30만원	20만원	10만원

* 자배법 시행령 [별표 5]

○ 미가입운행시 벌칙
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
□ 담보내용

① 대인배상 I

자동차를 소유, 사용, 관리하는 동안에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자배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.

② 대인배상 II

○ 보상범위

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I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

구 분	내 용
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	사망, 부상, 후유장애
비 용	손해방지 및 경감비용, 권리보전과 행사비용, 긴급조치비용,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
기 타	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

- 보상한도 : 피해자 1인당 1억원/2억원/3억원/무한 등
- 특징 : 대인 I의 초과손해 보상

③ 대물배상

○ 보상범위

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, 파손,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생긴 피해자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.

구 분	내 용
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	- 직접손해: 수리비용, 교환가액 - 간접손해: 대차료, 휴차료, 영업손실
비용	손해방지 및 경감비용, 권리보전과 행사용, 긴급조치비용,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
기타	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

- 보상한도 : 1사고당 1천만원/2천만원 (2016.4.1일 이후 2천만원이상 가입의무화)

*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약으로 가입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

④ 자기신체사고

- 보상범위

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, 부상,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
- 보상한도

구 분		사망/부상/후유장애
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 금액	자기신체 사고	1,500만원/1,500만원/1,500만원
		3,000만원/1,500만원/3,000만원
		5,000만원/1,500만원/5,000만원
		1억원/1,500만원/1억원
	자동차상해 특별약관	1억원/1,000만원/1억원
		2억원/2,000만원/2억원
		3억원/3,000만원/3억원
		5억원/5,000만원/5억원
		7억원/1억원/7억원
		10억원/1억원/10억원

*부상가입금액 확장 특약으로 부상가입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

⑤ 자기차량손해

○ 보상범위

피보험자동차에 타인자동차와의 충돌에 의한 손해와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중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. (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)

* 단, 타인 자동차의 차량 등록번호와 운전자(또는 소유자)가 확인된 경우에만 한합니다.

*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약으로 접촉, 추락, 전복, 화재, 폭발, 낙뢰, 차량의 침수 등에 의한 손해까지 확장할 수 있음

○ 보상한도 :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

○ 자기부담금 :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 자기부담금과 최대 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20% 또는 30%에 해당하는 금액

⑥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

○ 보상범위

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(뺑소니차 포함)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피보험자 1인당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.

○ 가입조건 : 대인배상 I, 대물배상,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

○ 특 징 :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가입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자동 적용

□ 주요 면책사항(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)

담보종목		주요 면책사항
대인배상 I		-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
입 의 담 보	공통적용	-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-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,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(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제외) -지진,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-피보험자자동차를 시험용,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(단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)
	대인 II	-피보험자 또는 그의 부모, 배우자, 자녀에게 생긴 손해 -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-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
	대물	-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-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-피보험자자동차에 실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-남의 서화, 골동품, 조각물,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(단,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가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손 보상)
	자기신체사고 (자동차상해)	-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.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. -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
	무보험차에 의한 상해	-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.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. -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-피보험자의 부모, 배우자, 자녀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
	자기차량 손해	-피보험자자동차의 일부 부분품, 부속품, 부속기계장치 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-피보험자자동차에 생긴 흠, 마멸, 부식, 녹 등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-음주 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

다. 주요 특별약관

보험회사와 개개의 계약자간에 기본계약 내용이외에 별도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을 말하며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약관.

■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(개인용·업무용·영업용·이륜차)

1) 특약의 요지

보험계약자가 납입할 1년간의 보험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함.

2) 유의사항

가) 보험료 납입최고기간

제 2회 이후의 분납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는 기간으로 분납보험료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(마지막날 24시)

→ 납입최고기간 말일까지도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됨.

나) 보상범위

보험료 납입최고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며, 최고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, 그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는 면책임.

다) 보험계약 부활

보험료 납입최고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지된 후 30일만에 미납입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음.

라) 단기계약 및 대인배상 I (영업용 제외)에 대하여는 보험료 분할납입특약을 적용하지 아니함.

■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(개인용·업무용·이륜차)

1) 특약의 요지

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.

2) 가족의 범위

가족의 범위

-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, 계부모(단, 부모,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)
-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, 계부모(단, 부모,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)
-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
-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,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, 양자 또는 양녀, 계자녀(단,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)
-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(계자녀의 배우자 포함. 단, 자녀,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)

3) 유의사항

-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"기본계약"으로 변경하여야 함.
-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.

■ 가족운전자 및 형제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(개인용)

1) 특약의 요지

피보험자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가족 및 형제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.

2) 가족 및 형제의 범위

가족 및 형제의 범위

-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, 계부모(단, 부모,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)
-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, 계부모(단, 부모,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)
-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
-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,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, 양자 또는 양녀, 계자녀(단,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)
-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(계자녀의 배우자 포함. 단, 자녀,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)
- ⑥ 법률 또는 사실혼관계상 부 또는 모를 같이하는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및 자매

3) 유의사항

-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및 형제 이외의 자가 운전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"기본계약"으로 변경하여야 함
-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.

■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(개인용·업무용)

1) 특약의 요지

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.

2) 배우자의 범위

배우자의 범위

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.

3) 유의사항

-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운전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"기본계약"으로 변경하여야 함.
-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.

■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(개인용)

1) 특약의 요지

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를 포함하여 2인으로 고지하는 경우에 기명피보험자를 포함한 2인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.

(기명피보험자를 제외한 1인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운전자임)

2) 유의사항

-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를 포함하여 2인 이외의 자가 운전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"기본계약"으로 변경하여야 함.
-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.

■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(개인용·업무용·이륜차)

1) 특약의 요지

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.

2) 유의사항

-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"기본계약"으로 변경하여야 함.
-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.

■ 가족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(개인용)

1) 특약의 요지

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가족, 기명피보험자가 정한 “지정1인 운전자”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.

2) 가족 및 지정1인 운전자의 범위

— 가족 및 지정1인 운전자의 범위 —

1. 이 약관에서 ‘지정1인 운전자’라 함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정한 1인으로서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운전자를 말합니다.
2.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, 계부모(단, 부모,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)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, 계부모(단, 부모,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)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,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, 양자 또는 양녀, 계자녀(단,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)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(계자녀의 배우자 포함. 단, 자녀,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)를 말합니다.

3) 유의사항

-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, 지정1인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"기본계약"으로 변경하여야 함.
-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.

■ 부부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(개인용)

1) 특약의 요지

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, 기명피보험자가 정한 “지정1인 운전자”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.

2) 배우자 및 지정1인 운전자의 범위

— 배우자 및 지정1인 운전자의 범위 —

1.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.
2. 지정1인 운전자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기명피보험자가 정한 1인으로서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운전자를 말합니다.

3) 유의사항

-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, “지정1인 운전자” 이외의 자가 운전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"기본계약"으로 변경하여야 함.

-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.

■ 부부 및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(개인용)

1) 특약의 요지

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.

2) 배우자 및 자녀의 범위

배우자 및 자녀의 범위

1.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.
2.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①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,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, 양자 또는 양녀, 계자녀(단,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) ②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(계자녀의 배우자 포함. 단, 자녀,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)를 말합니다.

3) 유의사항

-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운전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"기본계약"으로 변경하여야 함.
-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.

■ 기명피보험자 및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(개인용)

1) 특약의 요지

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자녀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.

2) 자녀의 범위

자녀의 범위

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①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,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, 양자 또는 양녀, 계자녀(단,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) ②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(계자녀의 배우자 포함. 단, 자녀,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)를 말합니다.

3) 유의사항

-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와 자녀 이외의 자가 운전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"기본계약"으로 변경하여야 함.

-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.

■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(개인용)

1) 특약의 요지

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.

2) 자녀의 범위

자녀의 범위

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①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,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, 양자 또는 양녀, 계자녀(단,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) ②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(계자녀의 배우자 포함. 단, 자녀,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)를 말합니다.

3) 유의사항

-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이외의 자가 운전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"기본계약"으로 변경하여야 함.
-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.

■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(개인용·업무용·영업용·이륜차)

1) 특약의 요지

- 해당 연령 미만의 운전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함.

2) 특약의 종류

운전자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

운전자연령 만 22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

운전자연령 만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

운전자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

운전자연령 만 2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

운전자연령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

운전자연령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

운전자연령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

운전자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

(개인용 기준이며 업무용, 영업용, 이륜차는 차종마다 가입이 가능한 특약이 상이함)

3) 연령기준

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연령(주민등록상의 만 연령을 말함)

4) 유의사항

-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가입 입증책임

: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또는 만22/24/26/28/30/35/43/48세 이상 한정 운전특별약관 가입시 특약내용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운전자의 연령을 이유로 면책할 수 없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음.

(단,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)

■ 유상운송 위험담보특별약관 (개인용·업무용)

1) 특약요지

보통약관에서는 승용차 및 버스의 경우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요금이나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나, 승용 또는 승합차의 경우 이 특약에 가입하면 유상운송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함. 단 6인승 이하 개인 소유 승용차(긴급수송용 제외)의 경우 화물운송 용도 유상운송 중 생긴 사고만 보상함.

2) 가입대상 (대인배상 I 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.)

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승용 또는 승합차(버스)

■ 전차량 일괄계약 자동담보 특별약관 (업무용)

1) 특약의 요지

보험기간 중도에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고 즉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특약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담보되어 보상받을 수 있으며, 보험기간 중도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즉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였어도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해지할 수 있음.

2) 가입대상

피보험자가 소유, 사용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일괄하여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음.

3) 유의사항

이 특약이 적용된 계약은 자동차의 양도시 보험계약을 양도할 수 없음. 이 특약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업체의 경우 단체할인할증 실적 평가를 위해 보유자코드를 부여받아야 함.

(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)

■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(업무용)

1) 특약의 요지

관용자동차에 자동 적용되는 특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때에는 대체차량에 보험계약이 승계됨.

2) 가입대상

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모든 관용자동차

■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(영업용)

1) 특약의 요지

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(개인택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자 포함)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.

2) 가입대상

기명피보험자만이 운전하는 개인택시, 개인소유화물자동차, 개인소유건설기계

3) 유의사항

이 특약에 가입한 계약은 자동차의 양도시 보험계약을 양도할 수 없음에 특히 유의하여야 함.

■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 (개인용·업무용·영업용·이륜차)

1) 특약의 요지

자동차 양도 이후, 양수인인 이전 등록하는 기간인 15일 동안(무보험상태) 양도인의 추가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담보되는 특약으로 동 기간 중 양수인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양도인이 가입한 의무보험 일시담보특약에 의해 보상함. 단, 이 경우 양수인은 반드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.

2) 유의사항

보상하지 않는 손해

- ①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
- ② 양도된 피보험자동차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
- ③ 보통약관의 「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」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

라. 보험료 분석표 예시

KB손해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www.kbinsure.co.kr 『보험가격공시』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마. 보험료 산출기초

- △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(예정부가보험료)을 반영하여 산출하며, 예정부가율(예정부가보험료)은 예정이익률과 예정사업비율(예정사업비)로 구성됩니다.

(단위 : %)

구 분		손해율	사업비율	이익률
비사업용	책임보험	76.8	23.2	0.0
	임의보험	74.5	23.5	2.0
사업용	책임보험	86.2	13.8	0.0
	임의보험	83.2	14.8	2.0

△ 자동차보험료 계산방법 예시

$$\boxed{\text{적 용 보험료}} = \boxed{\text{기본 보험료}} \times \boxed{\text{특 약 요 율}} \times \boxed{\begin{array}{c} \text{가입자특성요율} \\ (\text{보험가입경력요율} \times \\ \text{교통법규} \\ \text{위반경력요율}) \end{array}} \times \boxed{\text{특 별 요 율}} \times \boxed{\begin{array}{c} \text{(우량할인·} \\ \text{불량} \\ \text{할증요율)} \end{array}} \times \boxed{\text{3년간사고} \\ \text{평가요율}}$$